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9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 가. 명 칭: 면목3.8동 572-1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비고
1	중랑구	면목3.8동 572-1번지 일대	69,712.7	

2. 권리산정기준일: 2025. 10. 30.(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60)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

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892	

※ 중랑구청(주택개발추진단-3525, 2025.10.22.)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요청한 일자에 따라 고시함

■ 관계도면(면목3.8동 572-1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